

배포 일시	2022. 11. 24.(목)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4일 10시 기준 상황

□ 화물연대 동향

- 오전 10시부터 지역본부별로 의왕ICD·부산신항 등 전국 15개소에서 총 9,600여명이 출정식 이후 주요 거점별 분산 대기 예정

<주요 물류거점 집회 인원 현황>

지역	집회인원	지역	집회인원	지역	집회인원
의왕ICD	1,000명	인천신항	500명	광양항	2,100명
부산신항	800명	포항 현대글로벌비스	800명	군산항	1,000명
울산신항	800명	당진 현대제철	1,000명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150명

- 집회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2.2만명 추정)의 약 43% 수준으로, 현재 까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특이사항은 없음

□ 항만 등 물류 동향

-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9%)은 평시(‘22.10월, 64.5%) 수준이며, 집단운송거부 전 사전수송에 따라 전일 17시부터 금일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높음(붙임1)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하여 사전 운송조치 함에 따라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주요 조치사항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왕ICD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강력히 촉구
-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화주·운수사 비상 회의(13:30)를 실시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및 정상 운송 독려 당부
-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상황 점검 회의(17:00)

붙임 1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4. 10:00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입 (C)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 (D)	전일 17시- 금일 10시 반출입 (C+D)	전전일 17시- 전일 10시 반출입 (E)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0시 (B)	전일 (10시)	금일 10시 (B/A)	전일 (10시)	평시 (22.10)					반입	반출	합계
합 계	941,283	601,789	584,745	63.9	62.1	64.5	39,837	30,139	69,976	73,206	17,263	19,561	36,824
부산항	592,335	398,581	383,161	67.3	64.7	68	28,917	20,039	48,956	50,710	12,155	13,417	25,572
인천항	112,921	82,722	82,035	73.3	72.6	76.3	5,905	5,504	11,409	11,198	2,318	2,785	5,103
광양항	110,856	71,816	70,349	64.8	63.5	61.4	3,155	2,989	6,144	6,750	1,390	2,012	3,402
평택· 당진항	39,281	20,257	19,920	51.6	50.7	59.3	1,022	932	1,954	2,600	710	705	1,415
울산항	29,464	15,464	17,021	52.5	57.8	55	366	318	684	916	351	309	660
군산항	8,006	1,225	1,053	15.3	13.1	13.3	181	64	245	171	82	77	159
마산항	3,700	214	235	5.7	6.3	5	0	0	0	0	0	0	0
대산항	8,255	2,470	2,470	29.9	29.9	26	100	119	219	554	113	120	233
포항항	24,041	7,159	6,905	29.7	28.7	26	49	43	92	89	22	20	42
동해항	1,150	500	500	43.5	43.5	26	11	11	22	24	8	7	15
목포항	8,022	485	509	6.0	6.3	5	127	108	235	177	106.8	104.8	211.6
경인항	3,252	896	587	27.5	18	22	4	12	16	17	7	4	11

붙임 2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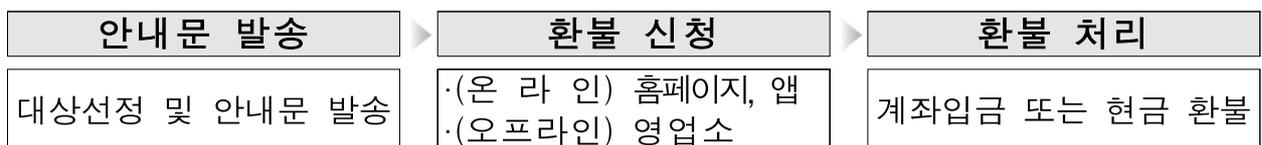
-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쏘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면제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쏘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붙임 3**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허가 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